

이제 警察도 獨自的 搜查權 가져야

- 許准榮 경찰청장,「수사권조정」에 대해 강한 소신 피력 -

최근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15만 경찰조직의 總帥로서 경찰 수사권 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上命下服 관계인 檢·警의 지위를 相互協力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밝혔다. 허 청장은 「경찰은 지금까지 모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왔으나, 이제 특정한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 수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수사주체로 명시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核心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에 있어서「경찰」로만 한정돼 있는 수사 주체를 「검찰과 경찰」로 하자는 것이 허 준영 청장의 지론이다.

『외국의 주요 국가 대부분이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그는 『英·美法에는 訴追(소추: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와 수사가 분리돼 있어 수사는 경찰이, 起訴(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추와 수사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는 검찰이 소추와 수사를 장악할 경우, 소추에 유리하도록 수사를 인위적으로 한 방향으로 끌고 갈 우려가 높고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들었다.

인권침해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200만 건의 형사사건 중 97%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 검사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로서도 권한이 너무 커지면 권한의 오남용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허 청장은 「늘 사건현장에서 숨 쉬는 경찰은 검사보다 현장감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사건수사에는 「지식」보다「경험」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할 때가 많은데, 사건경험이 경찰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 밖에 없는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질 때가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에는 수사관들의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무경험』이라는 그는 「경찰의 보고서를 보고 사건내용을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는 검사와 일선 사건현장에서 시체를 만져 가며 수사하는 경찰 수사관 중 누가 사건을 잘 해결하겠느냐」고 반문했다

「權檢責警」에서 「權警責警」으로 가야

허 청장은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고, 수사가 잘못됐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질 테니까, 그에 따른 권한도 필요하냐」고 주장했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사건의 경우 수사성과가 부족하면 국민은 경찰을 질타하지만 경찰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일선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수사지휘는 검사가 하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했는데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이라는 것.



그는 「지금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權檢責警(권검책경: 권한은 검찰에 있고, 책임은 경찰이 진다)」인데, 이제 는 權警責警, 즉,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이 질테니까 그에 따른 권한도 경찰에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경찰에 독자적 수사착수와 진행 權限 달라

『사건수사는 「수사착수→본격적 수사→수사종결(사건검찰에 송치)」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지금은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종결까지 모든 과정에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허 청장은 「앞으로 수사착수 및 본격적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종결권(불기소 처리)과 소추를 위한 경찰의 보안수사 지시권, 중요한 정치 및 경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에 대해서는 계속 검찰이 담당을 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했을 경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징계요구권도 지금처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許 청장은 「독자적인 수사 착수 및 진행권한을 경찰에 부여할 경우, 이중수사의 폐해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이 다시 처음 단계에서부터 再수사를 하는 바람에 사건 당사자들은 결국, 중복 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공무원도 경찰에서 搜查 받을 수 있어야

수사 착수 및 진행 권한이 경찰에 부여되면, 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가에 대해서 허 청장은 「경찰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검사에게 조사받고 형사처벌도 받는 것처럼, 검사도 잘못을 하면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상황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는 「이제 경찰공무원도 잘못을 하면, 담당하게 경찰에 나와 수사를 받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警·檢을 「上命下服」으로 규정한 형소법 개정 필요

허 청장은 「형소법 제196조는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上命下服」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조항을 「상호협력」관계로 바꾸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형소법 제196조를 「경찰과 검찰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되,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별도 명시화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일단, 일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한 뒤, 경찰이 무리 없이 업무를 처리해 나갈 경우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줄여 나가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는 꼭 풀어야 할 숙제

허 청장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경찰내 모든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 것」이라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 여부는 결국 국회에서의 형소법 개정 문제로 귀착이 되는데,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형소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가 국민의 代議(대의)기관이므로 우선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과거와는 크게 다르게 향상됐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 실감하고 있을 것이며, 「검찰이 국가 조직 중 유일하게 성역화 돼 있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도 국회가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아울러 허 청장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 요구가 경찰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국가 사법조직의 유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 수사권 독립은 이뤄져야 하며, 국민 70% 이상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다른 기관이나 국회가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지적하고 「내일 그만둔다고 해도 수사권 조정 문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강력하게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許南棼 서울병무청장

- 제2의 인생개척하고 있는 영원한 경찰인 -



서울병무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허남훈(56세)이 특유의 독신과 경찰 정신으로 남다른 제2의 인

생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지난 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에 투신해 진주·영암·서울동부 경찰서장,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거쳤고, 지난 98년부터 충북·부산병무청장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서울병무청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찰 지휘관 경험을 살려 발전적인 병무행정을 펼치고 있는 영원한 경찰인이다.

『앞서가는 병무행정의 일환으로 전 직원을 민원봉사 요원화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신』이라는 그는 「친절한 병무청, 투명 공정한 병무청, 국민과 함께하는 병무

청」을 치르면서 진주성 대첩에 대한 탐구를 생각하게 됐다』는 그는 「밀러드는 왜군에 놀라 임금 선조와 고위 관리들이 평북 의주로 출행량쳤을 때 끝까지 남아 진주성을 지켰던 건 민초들이었다면서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백성들의 애국혼을 오늘에 되살리고 싶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18년 동안 사료를 모으고 쓰는 데만 4년이 걸렸다. 허 회원은 이 책에서 김시민 장군 등 유명인사는 물론 진주성 수문장 박세항 등 잊혀진 용사 39명의 공훈을 되살려냈다. 「이 책이 입진왜란의 교훈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3권으로 된 단원 「김홍도, 환쟁이 새 전설」(2003년 발간)은 당대 최고의 화선 김홍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슬픈 전제화가.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환쟁이 새의 전설」로 사라지고만 단원 김홍도의 삶과 예술을 담았다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 등 多數의 책 펴내

청이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남다른 필력을 소유하고 있는 그는 예술과 역사를 넘나드는 장르의 책들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를 비롯, 「진주성」등 多數의 책을 집필한 다재 다능한 경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너희가 포도청을 어찌 아느냐」(2001년 발간)는 허 회원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중의 하나로,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경찰기관인 포도청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회상과 경찰상을 보고 있다. 그는 포도청의 역사와 조선시대의 행정기관을 살펴보면 진정한 포도청의 이미지는 그 사회, 국가의 건전 상태를 바로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진주성」(2004년 발간)은 입진왜란 3대 승리의 하나인 진주성 대첩을 그린 역사소설이다. 「지난 87년 6월 항쟁 때 진주경찰서장으로서 1만여명의 시위학생들을 경찰병력 100명으로 진주시내로 들어오는 다리에서 막아낸

허 회원은 3년 전 충북병무청장 재직시 우연히 단원이 연풍현감을 지냈다는 사실을 안 뒤 크게 놀랐고, 단원에 빠져든 그는 3년여 동안 자료를 수집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

허 회원은 그 외에도 「환쟁이의 법이 념을 찾아서」(1996), 「한국경찰제도사」(1998), 등의 저서를 펴내 화제를 모았다.

「현직 시절 배운 경험들이 퇴직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허 회원.

『앞으로도 영원한 경찰인의 긍지를 가지고 제2의 인생에 과감히 도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약력

49년생. 동아대학교(법학박사), 호주 캔버라 대학 졸업. 행정고등고시(21회) 합격. 영암·진주·서울동부 경찰서장, 1994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1998년 충북, 부산병무청장

인권마라톤 대회 개최

10월 16일(일) 오전 9시20분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다양하고 풍성한 부대행사와 함께 합니다

- 주 최 : 경찰청, 경찰공제회
- 신청기간 : 2005. 5. 23(월)~9. 16(금), 인터넷 신청만 가능 (www.policemarathon.go.kr)

- 대회종목 : 하프(21.0975km), 10km, 5km - 3개 종목

- 참가자격 : 일반국민(경찰공무원 포함) 하프, 10km 종목은 18세 이상 (단, 5km는 연령제한 없음)

- 모집인원 : 10,000명(선착순 마감)

- 참 가 비 : 하프·10km - 20,000원 / 5km - 15,000원

- 부대행사 : 경찰특공대, 기마경찰대, 경찰의장대 시범 및 경찰교향악단 공연

※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준결성, 결승전 동시진행

- 개인기념품 : 고급티셔츠 및 완주메달

- 단체기념품 : 30인이상 단체참가시 단체텐트 증정 및 설치장소 제공(선착순 100팀)

경 찰 청

각국의 검사권한 비교표

분류	검사의 기소권한				검사의 수사상 지위				검사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수사 종결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공소 취소권	수사권	수사 지휘권	자체 수사력	검경 조사 증거능력 차이	중앙 집권 여부	경찰 수사 일반 근거 조항 부재	검찰 영장 청구권 헌법 규정	인권 옹호 직무 방해죄 유무	체포 구속 장소 검찰권	사법 경찰계 · 체임 요구권	변사 체 검시권	긴급 체포 사후 승인 제도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 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	관할 외 수사 시 보고	사건 이송 지휘	고소 고발 사건 송치 전 지휘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기간 연장 지휘	중요 사건 발생 보고	정보 보고
한국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	×	×	×	×	×	×	×	×	×	×

각국 경찰의 수사권한 비교표

분 류	경찰의 수사상 권한							
	경찰수사의 일반근거(조항)	독자적 수사권	대인적 강제수사권				대물적 강제수사권	
			독자적 영장청구권	무영장 인신구속권 (긴급체포)	무영장 체포 피의자 석방권	독자적 강제수사권	압수물 처리권	훈방권
한 국	×	×	×	○	×	×	×	△
일 본	○	○	○	○	○	○	○	△
독 일	○	△	×	○	○	△	△	×
프랑스	○	△	×	○	○	×	×	×
미 국	○	○	○	○	○	△	○	○
영 국	○	○	○	○	○	○	○	○